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00

발의연월일: 2020. 10. 5.

발 의 자:윤재갑·홍문표·조경태

김수흥 · 서영교 · 이개호

이재정 • 전용기 • 이정문

강병원 · 위성곤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업기계의 제조·수입업자는 다른 용도의 기계와 구분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, 동력운반차 등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, 시행규칙에서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해당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형식표지판의 경우 금속이나 스티커 등으로 제작되어 탈부 착이 용이하여 기존 형식표지판을 제거한 뒤 새로운 형식표지판을 부 착할 경우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연월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 이 문제로 지적되었고, 실제로 농기계 제조업체가 이러한 점을 악용하 여 대리점에 제조연월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농업용 표시를 할 때 제조연월은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각인하는 형태로 하고 누구든지 제조연월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

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 인의 알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, 제1 8조제1항제4호).

법률 제 호
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이 경우 제조연월은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.
- ② 누구든지 제조연월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8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조연월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농업기계 표시의무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

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9조의2(농업기계 표시의무) ① | 제9조의2(농업기계 표시의무) ① |
|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 | |
| 자는 다른 용도의 기계와 구분 | |
| 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의 알권 | |
| 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조하 | |
| 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, | |
| 동력운반차 등 농림축산식품부 | |
| 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 | |
| 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여야 한 | |
| 다. <u><후단 신설></u> | 이 경우 제조연월은 농업기 |
| | 계의 본체 및 엔진에 각인하는 |
| |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. |
| <u><신 설></u> | ② 누구든지 제조연월 표시를 |
| |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|
| |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|
| | <u>다.</u> |
| <u>②</u> (생 략) | 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 |
| 제18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| 제18조(과태료) ① |
|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| |
|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| |
| 부과한다. | |
| 1. ~ 3. (생 략)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4.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|

| | 제조연월 표시를 지우거나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 |
| | <u>위를 한 자</u> |
| <u>4.</u> (생 략) | <u>5.</u> (현행 제4호와 같음) |
| ②・③ (생 략) | ②・③ (현행과 같음) |